

유해물질 관리(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법학박사)

정진우

1 | 석면조사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려는 경우에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하 '건축물·설비의 소유주 등'이라 한다)은 작업 전에 i)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이 함유되었는지 여부, ii)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 위치, 면적 등을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석면함유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해체 작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은 제38조의2에서 석면조사 제도를 두고 있다. 즉,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은 규모에 따라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건축물·설비의 소유주 등은 건축물 또는 설비의 소유주, 임차인, 사업시행자, 재개발조합 등 건축물의 철거·해체 권한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 기관석면조사

건축물·설비의 소유주 등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설비의 소유주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에서는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i)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이 함유되었는지 여부, ii)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 위치, 면적, iii)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법 제38조의2 제2항, 시행령 제30조의3 제1항).

기관석면조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 ① 건축물(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 제외)의 연면적 합계²⁾가 50㎡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해체 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 이상인 경우
- ② 주택(「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³⁾ 포함)의 연면적 합계가 200㎡ 이상이면 서, 그 주택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 ③ 설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에 자재(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패킹재, 실링재, 기타 그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된 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재)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 이상 또는 부피의 합이 1㎥ 이상인 경우
- ④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해체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 합이 80m 이상인 경우

그리고 기관석면조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법 제38조의2 제6항, 시행규칙 제80조의4).

- ① 건축도면, 설비제작도면 또는 사용자재의 이력 등을 통하여 석면 함유 여부에 대한 예비조사를 할 것
- ② 건축물이나 설비의 해체·제거할 자재 등에 대하여 성질과 상태가 다른 부분들을 각각 구분할 것
- ③ 시료채취는 성질과 상태가 다른 부분들로 구분한 자재의 각각에 대하여 그 크기를 고려하여 채취 수를 달리하여 조사할 것

이 경우 고품시료를 1개만 채취·분석하는 경우에는 그 1개의 결과를 기준으로 해당 부분의 석면함 유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고품 시료를 채취·분석하는 경우에는 석면함유율이 가장 높 은 결과를 기준으로 해당 부분의 석면함유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80조의4 제2항). 그 밖에 기관석면조사 방법 및 판정의 구체적인 사항, 크기별 시료채취 수, 석면조사 결과서 작성 등은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다.

나. 일반석면조사

기관석면조사 대상이 아닌 건축물·설비의 소유주 등은 i)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이 함 유되었는지 여부, ii)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 위치, 면적을 조사(일반석면조 사)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법 제38조의2 제1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8조).

다. 석면조사 생략

기관석면조사 대상 중 다음 사항의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확 인을 받은 후 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법 제38조의2 제2항 단서, 시행령 제30조의3 제2항, 시행규칙

제80조의2 제1항).

①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해체부분⁴⁾에 사용된 자재가 설계도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이 함유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해체부분에 석면이 1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건축물·설비의 소유주 등이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석면조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석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법 제38조의2 제3항, 시행규칙 제80조의2 제2항). 다만,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건축물석면 조사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80조의2 제2항 단서).

라. 위반에 대한 조치

지방노동관서장은 건축물·설비의 소유주 등이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는, 일반석면조사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72조 제5항 제4의3호), 기관석면조사에 대해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72조 제1항 제1호)를 부과하는 한편, i) 해당 건축물·설비의 소유주 등에 대한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의 이행명령, ii)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의 결과를 보고받을 때까지의 작업중지 명령을 각각 할 수 있다(제38조의2 제4항).

위 석면조사·작업중지명령에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7조의2 제2호).

② | 석면 해체·제거작업⁵⁾기준의 준수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법 제38조의3), 기관석면조사대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설비의 소유주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자(이하 '석면해체·제거업자'라 한다)⁶⁾를 통해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38조의4 제

1항). 그리고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작업을 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작업을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38조의4 제3항).

가. 석면 해체·제거작업기준의 준수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법 제38조의3). 이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부터 497조까지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나. 석면 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서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제거 대상은 다음과 같다(법 제38조의4, 시행령 제30조의7).

- ① 철거·해체하려는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자재에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
- ② 분무재, 내화피복재에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 함유된 경우
- ③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제30조의3 제1항 제3호 각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및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 이상인 경우
- ④ 파이프에 사용된 보온재에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인 경우

다만, 건축물·설비의 소유주 등(석면해체·제거 작업을 스스로 하려는 자)이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요건(인력·시설 및 장비)을 갖추고 증명서류를 첨부해 작업신고를 하는 경우는 직접 해체·제거할 수 있다(법 제38조의4 단서, 시행령 제30조의7 제2항).

석면해체·제거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하여서는 안 된다(법 제38조의4 제2항).

다. 석면 해체·제거작업 신고절차 및 처리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 시작 7일전까지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석면해체·제거 작업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6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80조의7).

라. 석면농도기준 준수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해체·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고,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로 하여금 작업완료 후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한 후 그 결과를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38조의5).⁷⁾

마. 위반에 대한 조치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석면해체·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8조의3 위반)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7조의2 제1호). 그리고 필요한 경우 해체·제거작업 중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이 기관석면조사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석면해체·등록업자로 하여금 석면을 해체·제거작업을 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8조의4 제1항 위반)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 석면해체·제거작업 중지명령 및 시정명령(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해체·제거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이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석면 해체·제거를 하도록 한 경우(법 제38조의4 제2항 위반)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한 경우 해체·제거 중지 및 시정명령(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해체·제거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8조의4 제3항 위반)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신고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작업완료 후 공기 중 농도를 석면농도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8조의5 제1항 위반)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석면농도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는 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석면해체·제거업자가 공기 중 석면농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8조의5 제1항 위반)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증명자료 제출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석면해체·제거 작업완료 후 공기 중 석면농도가 기준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설비의 소유주 등이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한 경우(법 제38조의5 제3항 위반)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철거·해체작업 중지명령 및 석면농도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는 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병과할 수 있다.

석면해체·제거업자가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법 제38조의4 제6항, 시행령 제30조의10).⁸⁾

주석

1. 석면조사기관의 지정요건은 산안법 시행령 제30조의4 및 시행규칙 제80조의3에 규정되어 있다.
2.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의 경우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수치이며, 여러 동의 건물들을 철거할 경우 해당 건물들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한 수치를 의미한다.
3.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데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4. ‘철거·해체부분’이란 철거·해체하고자 하는 모든 부분을 의미한다.
5. ‘석면 해체·제거작업’이란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의 파쇄(破碎),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2조 제4호).
6.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요건은 산안법 시행령 제30조의8 및 시행규칙 제80조의5에 규정되어 있다.
7.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은 실내 작업장을 대상으로 하므로, 옥외작업의 경우에는 석면농도 측정을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참고).
8. 산업안전보건법상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은 안전관리대행기관(법 제15조의3), 보건관리대행기관(법 제16조 제3항) 및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법 제30조 제6항)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석면해체·제거업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산업보건과-39, 2010.7.14.).